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김 기 대 위원장님, 그리고 서울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□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
- □ 또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으로 분리·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도 안전교육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쳬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.

- □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교육의 대상을 지진, 화재, 해상사고, 감염병 등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정의하여 코로나19 등의 각종 감염병에 의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의 하였고 각 자치구별 균등한 교육 기화와 환경이 갖추어 질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 자치구별 안전교육 기관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□ 존경하는 도시안전 김 기 대 위원장님과 천만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